

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



목 차

수출입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

① 자동차 화물 일시양륙 신고 간소화	p.2
② 계류장 내 환적화물 일시 보관장소(CTA) 규제 완화	p.3
③ 농림축산물 가공업체 자유무역지역 조건부 입주 허용	p.4
④ 특혜(FTA, 일반특혜)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시행	p.5
⑤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	p.6

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

①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납기연장·분할 납부 지원 강화	p.7
②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 개선 등	p.8
③ 수출환급 시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	p.9
④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확대	p.10
⑤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통지 기한 신설	p.11

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을 통한 경제질서 확립

①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	p.12
② 공직퇴임 관세사 수입제한 범위 명확화	p.13
③ 등록취소 등 관세사 징계처분에 대한 관세사회 공고기간 신설	p.14
④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	p.15
⑤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의 신규 및 재지정	p.16

1 자동차 화물 일시양륙 신고 간소화

(통관물류정책과, 042-481-782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일시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이 다음 요건 충족시 <u>일시양륙신고 생략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생략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컨테이너 화물일 것</u> - 선박안전 및 적재공간 확보 등 일시양륙 불가피 - 선사가 <u>컨테이너 번호</u>, 장치 위치 등을 실시간 기록·관리 - 출항허가 전까지 본선 재적재 	<p>□ 일시양륙신고 생략 대상에 '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' <u>추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생략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컨테이너 화물 또는 <u>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일 것</u> - < 좌 동 > - 선사가 컨테이너 번호 <u>또는 차대번호</u>, 장치위치 등을 실시간 기록·관리 - < 좌 동 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전용운반선에 수출용 자동차 선적 시 일시양륙신고로 인한 선적 지체 해소

○ **【시행일】** '21. 6. 4.(지침 시행), '21. 9월 중(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 제15조 개정)

2 계류장 내 환적화물 일시 보관장소(CTA) 규제 완화

(통관물류정책과, 042-481-782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하기장소* 반입 없이 계류장 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(CTA)**에 환적화물 일시 보관</p> <p>*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</p> <p>** Cargo Transit Area: 환적화물 일시 대기 장소</p> <p>• CTA 보관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여객기 간</u> 환적화물 - <신 설> - 입항 후 <u>24시간</u> 이내 - ULD* 해체 및 재작업 <u>불가</u> <p>* 항공기용 탑재용기(Unit Load Device)</p>	<p>□ 계류장 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(CTA)에 환적화물 일시 보관 시 <u>규제 완화</u></p> <p>• CTA 보관 요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좌 동> - <u>화물기와 여객기 간 환적화물 허용</u> - 입항 후 <u>7일</u> 이내(보관기관 <u>연장</u>) - ULD 해체 및 재작업 <u>허용</u> (보수작업 제외)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인천국제공항의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

○ **【시행일】** '21. 6. 4.(지침 시행), '21. 9월 중(「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」 제4조 개정)

3 농림축산물 가공업체 자유무역지역 조건부 입주 허용

(보세산업지원과, 042-481-782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자유무역지역 입주제한 업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·임·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·가공하는 업종 <p>- < 신 설 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자유무역지역 입주제한 업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 좌 동 > • < 일정요건 구비시 입주 허용 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<u>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·가공하여 만든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</u> ② <u>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</u> ③ <u>보세사 채용</u> ④ <u>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</u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농림축산물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농림축산물의 수출 확대에 기여

○ **【시행일】** '21. 12. 16. 시행예정(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, 제11조제4항 신설)

4 특혜(FTA, 일반특혜)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시행

(자유무역협정집행과, 042-481-32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<i>FTA</i> 및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는 <u>세관 업무시간에만 발급 가능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 <p>- < 신 설 ></p>	<p>□ <i>FTA</i> 및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는 <u>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발급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 좌 동 > <p>- <u>세관 업무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발급을 희망하는 날의 직전 세관 업무일 까지 세관장에게 임시개청 신청</u></p>

- **【기대효과】** 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상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의 *FTA* 활용 수출 편의 제고
- **【시행일】** '21. 7. 1. 시행(「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지침」)

5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

(자유무역협정집행과, 042-481-32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장관 추천서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<p>- < 단서 신설 ></p>	<p>□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장관 추천서 <u>제출기한 연장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 좌 동 > <p>- <u>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(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)에 추천서 제출 가능</u></p>

- **【기대효과】**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협정관세 적용 기회 확대
- **【시행일】** '21. 7. 27. 시행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개정)

①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강화

(세원심사과, 042-481-7644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기한 연장·분할납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2년간 관세범칙(통고처분 포함) 및 체납사실이 없을 것 - 향후 체납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<u>중소·중견기업</u> • 지원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년도 납부세액의 50% 범위 내 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납부기한 연장·분할납부 <u>대상 확대 및 지원한도 폐지</u></p> <p>*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직·간접적으로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 좌 동 > - 향후 체납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<u>기업</u> • 지원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지원한도 한시 폐지</u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코로나-19 피해 성실 수출입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별 세정지원으로 자금난 완화

○ **【시행일】** '21. 5. 31. 시행(특별세정지원 대책)

2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 개선 등

(자유무역협정집행과, 042-481-3211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한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행자가 협정상대국에서 구매하여 반입한 휴대품은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 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 - 대상협정 : 한-EU FTA - 제출대상 원산지증명서 : 원본 	<p>□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한 FTA 협정관세 적용 <u>절차 개선 및 대상 확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 좌 동 > - 대상협정 : 한-EU FTA, <u>한-영 FTA, 한-EFTA FTA, 한-터키 FTA</u> - 제출대상 원산지증명서: 원본 또는 <u>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</u>

- **【기대효과】**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 간소화 및 FTA 적용 기회 확대, 여행자 휴대품 통관업무의 비대면화·Paperless화 촉진
- **【시행일】** '21. 7. 1. 시행(「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업무 처리 지침」 시행)

3 수출환급 시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

(세원심사과, 042-481-7873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다환급금 등의 자진신고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자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 <u>1천분의 18</u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과다환급금 등의 자진신고에 따른 환급가산금 이자율 <u>인하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 <u>1천분의 12</u>

- **【기대효과】** 과다환급 자진신고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완화
- **【시행일】** '21. 7. 30. 시행(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제16조 개정)

4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확대

(조사총괄과, 042-481-7912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밀수신고 연계 검거사건의 포상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고를 토대로 추가 검거한 경우 그 실적의 30%내 포상 	<p>□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밀수신고 연계 검거사건의 포상금 상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원회에서 검거 기여정도 등을 심의하여 <u>최대 50%까지</u> 공로 인정

- **【기대효과】** 밀수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하여 일반 국민의 마약 밀수 신고를 독려하고 마약 밀수입 범죄를 관세 국경 단계에서 차단
- **【시행일】** '21. 6. 1. 시행(「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」 제9조 개정)

5] 계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통지 기한 신설

(원산지검증과, 042-481-3213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계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을 수입자에게 통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요청한 원산지 확인 결과 통보 시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지 <p>- < 신 설 ></p> <p>- < 신 설 ></p>	<p>□ 계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을 수입자에게 <u>각각 30일 이내에 통지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 좌 동 > <p>- 원산지 확인 결과 <u>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</u> 수입자에게 회신내용 통지</p> <p>- 회신내용에 따른 <u>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</u> 수입자에게 결정내용 통지</p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계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 및 그에 따른 결정에 대한 수입자 통보 기한을 명확화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확대

○ **【시행일】** '21. 7. 27. 시행(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 개정)

1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시행

(전자상거래통관과, 042-481-783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input type="checkbox"/> < 신 설 >	<input type="checkbox"/> <u>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도 신설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등록대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중 ‘통신판매업자*’로 신고한 자로서</u> *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- <u>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</u> <p>※ 다만, 시행일 당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'22. 6. 30.까지 등록된 것으로 간주(등록유예)</p>

- **【기대효과】**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·감독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질서 확립
- **【시행일】** '21. 7. 1. 시행(「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정)

2] 공직퇴임 관세사 수입 제한 범위 명확화

(통관물류정책과, 042-481-785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< 신 설 ></p>	<p>□ 공직퇴임 관세사 수입 제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입제한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입 제한 국가기관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퇴직 전 1년간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* * 관세청의 경우 관세청, 세관, 세관비즈니스 센터 등을 각각 별개의 국가기관으로 취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입 제한 통관업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세사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 다만, 다음의 업무는 수행가능 ① 관세사가 아닌 자도 수행 할 수 있는 통관업(법 제2조제4호·제7호의 업무) ② 천재지변이나 전쟁·화재 등의 재난으로 입항세관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수입제한 대상 세관에서 처리한 수출입 신고 관련업무(관세사법 제2조제1호·제3호·제6호 및 제10호의 업무) <p>⇒ <u>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</u></p>

○ **【기대효과】** 공직퇴임 관세사의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관세사 제도의 책임성·신뢰성 제고

○ **【시행일】** '22. 1. 6. 시행예정(「관세사법 시행령」 제21조의3, 4 신설)

3 등록취소 등 관세사 징계처분에 대한 관세사회 공고기간 신설

(통관물류정책과, 042-481-7856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< 신 설 ></p>	<p>□ 관세법인·관세사가 <u>징계처분 또는 등록취소 등을 받은 경우 공고 의무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관세청장이 관세법인·통관취급법인 등에 등록취소, 업무정지 또는 관세사에 징계처분을 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세사회에 지체 없이 통보 - 2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● 관세사회가 통보받은 사항은 관세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<u>일정기간*</u> 동안 게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등록취소: 3년 ② 해당 업무정지 기간(업무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) ③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: 6개월 ④ 견책: 3개월

○ **【기대효과】**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관세사 징계 조치에 대한 실효성 제고

○ **【시행일】** '21. 6. 22. 시행(「관세사법 시행령」 제28조의2 신설)

4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

(공정무역심사팀, 042-481-7883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사후관리 대상물품(254개), 생략물품(50개) 운영</p>	<p>□ 사후관리 대상물품(255개), 생략물품(50개)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할당관세 적용물품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타 옥수수(가공용) 1건 ● FTA 추가발효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대상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-중미(파나마) FTA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조유(식품용), 조유(바이오디젤 제조용), 종이절연전선(전기통신용),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(전기통신용), 기타(전기통신용), 부분품(영사기용), 플러그와 소켓(동축케이블 또는 인쇄회로용) 등 7건 ● 연차별 FTA 세율 인하에 따른 사후관리 적용대상 일부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-EU, 한-영 FTA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유장분말(사료용), 유장(사료용), 변성 유장(사료용), 강낭콩(종자용) 등 8건

- **【기대효과】** 용도세율 및 관세감면 적용 물품에 대한 적정 관리를 통해 관세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
- **【시행일】** '21. 7. 1. 시행(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별표1의 가·나 개정)

5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의 신규 및 재지정

(공정무역심사팀, 042-481-7885)

종 전	달라지는 내용
<p>□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19개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농산물) 황기(식품용), 냉동고추, 당귀(식품용), 건고추, 지황(식품용), 작약(식품용), 김치, 팔, 콩(대두), 참깨분, 땅콩, 도라지, 양파(신선·냉장), 냉동마늘 • (공산품) 에이치형강, 자동차 휠, 플랜지, 연석, <u>모피의류</u> 	<p>□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19개 운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농산물) < 좌 동 > • (공산품) 에이치형강, 자동차 휠, 플랜지, 연석, <u>맨홀뚜껑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신규지정) 맨홀뚜껑 - (재지정) 황기(식품용), 건고추, 김치, 팔, 콩(대두), 참깨분, 땅콩, 도라지 - (지정제외) 모피의류

○ **【기대효과】** 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사회 안전 및 국내 소비자 보호

○ **【시행일】** '21. 8. 1. 시행(「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」 별표 1 개정)